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971
----------	-------

발의연월일 : 2025. 9. 15.

발 의 자 : 한민수 · 임오경 · 김우영
김기표 · 송옥주 · 홍기원
허 영 · 최민희 · 이용선
이학영 · 박상혁 · 박 정
이연희 · 황정아 · 조정식
의원(15인)

제안이유

최근 방송·미디어 환경이 OTT 확산 등 글로벌 경쟁 환경으로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국내 방송 시장은 광고매출 등 수익이 감소하고 가입자수 감소가 가시화되는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

특히, 최근 글로벌OTT의 유료방송 대체 양상은 유료방송 시장의 지속가능성마저 우려하게 하고 있으나, 현행 방송법은 유료방송에 대해 지상파 등과 동등·유사한 수준의 엄격한 규제를 유지하여 상대적으로 국내 규제에서 자유로운 글로벌 OTT와 규제 불균형을 발생시키고 대등한 경쟁을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속시키고 있음.

이에, 유료방송의 위기 타개와 시장의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매 7년마다 실시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에 대한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폐지하여 사업 운영의 자율성 강화하고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승인 유효기간과 재허가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홈쇼핑 채널)에 대한 승인 유효기간 및 재승인에 관한 규정을 폐지함(안 제16조 및 제17조).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홈쇼핑 채널)에 대한 재허가·재승인을 폐지함에 따라, 그간 법률에 근거 없이 재허가·재승인 조건 부가를 통해 사업자들에게 공통으로 의무화하였던 사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2조의2, 제76조의6, 제76조의7, 제92조의4, 제92조의5 신설).

1) 재허가·재승인 조건으로 부가하였던 방송사업자 간 공정한 체결 의무와, 계약 체결의 절차·방법 및 기준 등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76조의6 신설).

2) 재허가·재승인 조건으로 부가하였던 유료방송사업자의 표준계약서 활용 의무와 관련하여, 정부가 표준계약서를 마련·보급하고

활용을 우대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76조의7 신설).

3)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홈쇼핑 채널)에게 재승인 조건에서 정하여 준수하게 하였던 중소기업 상품 등 편성의무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72조의2 신설).

4) 방송시장의 상생환경 조성 및 방송사업자 간 협력 활동 장려를 위한 정부의 시책 마련, 상생협력사업 지원 및 방송사업자 간 상생협약 권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2조의4 신설).

5) 그 밖에 재허가·재승인 폐지 이후에도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과 시청자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이에 관한 자율적 노력 의무 규정을 마련함(안 제92조의5 신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중계유선방송사업과 제9조제5항”을 “제9조제5항”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의 허가 또는”을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중 “(放送채널使用事業者는 제외한다) 및 中繼有線放送事業者”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9조제1항, 제2항”을 “제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放送채널使用事業者”를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72조의2, 제76조의6, 제76조의7, 제92조의4 및 제92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중소기업 상품 등의 판매 지원) ①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 고시로 정하는 사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상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식품 등(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로 확대를 위하여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 중 중소기업 상품 등을 소개 및 판매하는 프로그램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중소기업 상품 등의 소개 및 판매 프로그램 편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중소기업 상품 등을 소개 및 판매하는 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하는 사업자 및 중소기업 상품 등의 범위
2. 연간 방송시간 중 중소기업 상품 등을 소개 및 판매하는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

제76조의6(방송 프로그램 및 채널 사용에 관한 계약 등) ① 방송사업자는 사업자 상호 간 방송 프로그램 및 채널 사용에 관한 계약을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협의 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르고, 그 협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의 절차·방법 및 기준 등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76조의7(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상호 간의 공정한 경쟁 및 투명한 유통·거래 환경 조성, 원활한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및 공급 등을 위하여 방송사업의 표준이 되는 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를 공동으로 마련하고 방송사업자 및 관련 단체에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6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하는 방송사업자 간의 계약에 적용되는 표준계약서는 그 소관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방송사업자에게 방송서비스의 제공, 콘텐츠 제작 또는 유통에 관한 재정지원을 우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내용 및 보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2조의4(상생협력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산업의 발전과 방송시장의 상생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사업자 간 조화로운 발전과 상생

협력에 관한 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사업자 간 상생 협력과 건전한 방송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하 “상생협력사업”이라 한다) 등을 발굴하여 자금,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각 규정에 따른 시책 및 상생협약, 상생협력사업에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 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 마련, 상생협약 체결 권장, 상생협력사업 발굴 및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상생협력사업에 관한 업무를 방송 관련 단체·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2조의5(지속가능한 방송환경 조성) ① 유료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는 고품질의 다양한 방송서비스 제공과 방송산업의 발전 및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청자 편익 증진, 지역 사회 활성화, 난시청 지역 해소, 취약계

층의 시청권 보호, 통일 대비 방송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사회적 기여

2. 우수한 방송 프로그램 확보와 방송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3. 방송기술의 발전과 방송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한 신기술 및 설비 투자

②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시청자 편익 증진, 소비자 보호, 방송 발전의 지원 등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방송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이 법 제9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받은 방송사업자로 본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허가 또는 재승인을 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와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에게 부가한 조건을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조건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하여 조정한 조건은 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승인의 조건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중계유선방송사업과 제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허가 및 승인 유효기간) 제9조제5항 ----- ----- ----- -----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 -----.
第17條(再許可 등) ①放送事業者(放送채널使用事業者는 제외한다) 및 中繼有線放送事業者가許可有効期間의 만료 후 계속放送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再許可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11항을 준용한다.	第17條(再許可 등) ①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 방송통신위원회----- -----.
②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放送채널使用事業者가承認有効期間 만료 후 계속放送을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再承認을 받아	②----- -----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방 송통신위원회----- -----

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허가 또는 再承認을 할 때에는 第10條第1項 各號 및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査하고 그 결과를 公表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④ (생략)

<신설>

-----.

③ 방송통신위원회-----

-----.

1. ~ 6.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72조의2(중소기업 상품 등의 판매 지원) ①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상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식품 등(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로 확대를 위하여 연간 방송되는 전체 프로그램 중 중소기업 상품 등을 소개 및 판매하는 프로그램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신 설>

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상품소개와 판매
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
송채널사용사업자의 중소기업
상품 등의 소개 및 판매 프로그
램 편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
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
용사업자 중 중소기업 상품
등을 소개 및 판매하는 프로
그램을 편성하여야 하는 사업자
및 중소기업 상품 등의 범위
2. 연간 방송시간 중 중소기업
상품 등을 소개 및 판매하는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

제76조의6(방송 프로그램 및 채널
사용에 관한 계약 등) ① 방송
사업자는 사업자 상호 간 방송
프로그램 및 채널 사용에 관한
계약을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
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협의 시 신의성실의

<신 설>

원칙에 따르고, 그 협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의 절차·방법 및 기준 등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76조의7(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상호 간의 공정한 경쟁 및 투명한 유통·거래 환경 조성, 원활한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및 공급 등을 위하여 방송사업의 표준이 되는 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를 공동으로 마련하고 방송사업자 및 관련 단체에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6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하는 방송사업자 간의 계약에 적용되는 표준계약서는 그 소관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신 설>

마련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방송사업자에게 방송서비스의 제공, 콘텐츠 제작 또는 유통에 관한 재정지원을 우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내용 및 보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2조의4(상생협력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산업의 발전과 방송시장의 상생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사업자 간 조화로운 발전과 상생 협력에 관한 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사업자 간 상생 협력과 건전한 방송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하 “상생협력사업”이라

<신 설>

한다) 등을 발굴하여 자금,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각 규정에 따른 시책 및 상생협약, 상생협력사업에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 마련, 상생협약 체결 권장, 상생협력사업 발굴 및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상생협력사업에 관한 업무를 방송 관련 단체·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2조의5(지속가능한 방송환경 조성) ① 유료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는 고품질의 다양한 방송 서비스 제공과 방송산업의 발전

및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청자 편익 증진, 지역 사회 활성화, 난시청 지역 해소, 취약계층의 시청권 보호, 통일 대비 방송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사회적 기여

2. 우수한 방송 프로그램 확보와 방송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3. 방송기술의 발전과 방송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한 신기술 및 설비 투자

②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시청자 편익 증진, 소비자 보호, 방송 발전의 지원 등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